

광주전남지방병무청 2차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

광주전남지방병무청 청년인턴 채용시험 서류전형
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3일
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

1.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

채용분야	응시번호	성명
청년인턴	1	홍○우
	3	김○광
	11	김○욱
	15	강○애

2. 면접시험 일정

일시	장소	비고
2026. 9. 10.(목) 14 : 00	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본관 2층 소회의실 (광주 동구 양림로 119번길 11, 학동)	신분증 지참

※ 불가피한 사유로 면접일시, 장소가 변경될 경우 사전 개별연락 예정

3. 정책제안서 등 제출서류

가. 제출일시 및 방법

- 제출기간: 2026. 9. 8.(화) 18시까지
- 제출방법 : 청년인재DB 모집공고 내 ‘광주전남지방병무청 2차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’에 제출

- ※ 제출서류는 아래의 번호 순서대로 하나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(모아찍기 금지)
- ※ 첨부파일명은 반드시 "성명(지원코드)"로 작성 예) 홍길동(인턴-01)
- ※ 제출서류 중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

○ 제출서류

제출서류	비고
1. 정책제안서 1부(별지 1호)	· A4 1매 이내로 작성 · 병무청 정책·사업·제도개선 아이디어 등
2.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1부 (별지 2호)	· 자필 서명 필수
3.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 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(별지 3호)	· 자필 서명 필수
4. 가산요건 관련 증빙서류	※ 해당자만 제출 ①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-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 1부 -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※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에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등 지원 기간이 명시된 서류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 -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② 상한 연령을 연장하는 경우 증빙서류

4. 최종합격자 발표(예정)

- 최종합격자 명단은 2026. 9. 18.(금) 청년인재DB, 광주전남병무청 홈페이지, 나라일터에 게시되며,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할 예정입니다.

5. 유의사항

-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을 지참하여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본관 3층 대회의실로 오시기 바랍니다.
- 면접개시 시간 내 미도착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.
- 면접시험 대상자는 면접시험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, 지정된 면접 일시에 미응시 할 경우 불합격 처리되니, 이 점 유의 바랍니다.
-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·전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(☎ 062-230-422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6. 9. 3.

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

<별지서식 제1호>

정책 제안서

지원분야		성 명		연락처		e-mail	
------	--	-----	--	-----	--	--------	--

제 목	※ 채용분야별 담당업무 관련 정책사업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 등
제안 배경 및 필요성	
현황과 문제점(원인)	
개선안 또는 정책대안	
예상 효과	

○ 정책제안서 작성요령

-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(글자크기 : 11, 글자체 : 제한없음)
- 청년의 시각에서 느낀 문제점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작성

* 기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창의적 사고를 보기 위한 것으로,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

※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

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

응시번호	지원코드	지원분야	성명	생년월일

목 록	해당여부
① 피성년후견인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⑨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.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
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6. . .

성명 :

(서명)

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귀하

<별지서식 제3호>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<u>공직자</u>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*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	해당 ☐ 비해당 ☐
2. ‘<u>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</u>’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	해당 ☐ 비해당 ☐
3-1. 해당 부패행위로 <u>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</u>된 사실이 있는지	해당 ☐ 비해당 ☐
3-2.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<u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</u>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)	해당 ☐ 비해당 ☐
4-1. 해당 부패행위로 <u>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</u>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	해당 ☐ 비해당 ☐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<u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</u>(5년 내)	해당 ☐ 비해당 ☐
4-3. 권익위법(‘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‘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	해당 ☐ 비해당 ☐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	해당 ☐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	해당 ☐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 년 월 일

생년월일

. . . 지 원 자

(서명)